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5.

발 의 자 : 박은정 · 김준형 · 박상혁
백승아 · 최혁진 · 이해민
신장식 · 김용민 · 진선미
서왕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‘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’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(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)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. 한편,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·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전국, 2021년 1,348건에서 2024년 7,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,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.2억원에서 약 101.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.

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·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

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, 「형법」 제225조 ‘공문서등의 위조 변조’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·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위·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,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39조제4항 신설). 위·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,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(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)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
제90조제2항 중 “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.

1.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·명칭 등을 사용한 자
2.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</u>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90조(과태료) ① (생략) ② <u>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<u><신설></u>	제9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-----</u> <u>-----.</u> 1. <u>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·명칭 등을</u>

<u><신 설></u>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 략) 2.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·명칭 등을 사용한 자 3. ~ 7. (생 략) ④ (생 략)	<u>사용한 자</u> 2.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 ③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